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전면개정 2016. 4. 20. 개정 2016. 6. 23.
개정 2017.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 14조에 따라 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 교원업적평가의 항목별 평가영역과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영역

제2조(교육영역) 교육영역은 교원의 교육과정개발,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수업관리, 강의평가, 학생지도, 우수인재유치 등의 영역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6.23.>

제3조(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개발은 국가표준직무능력(이하 “NCS” 라 한다) 기반 교육과정개발을 의미하며, 세부평가기준은 교학처 및 NCS지원센터의 실적자료를 근거로 별도로 정하여 평가하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제3조의2(교육과정운영) ① 전임교원은 학과의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교과목을 1년에 1과목 이상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6.23.>

②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수는 1과목 당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16.6.23.>

제4조(수업관리) ① 수업기간 및 시간 준수, 학생의 출결관리, 절차에 따른 휴강 및 보강 등 학생에게 수준 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교원의 노력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며 위반 시 재발방지를 위해 감점제를 도입, 반영한다.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동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칙의 관련 사항에 의거하여 학사관리 담당 부서인 교학처는 학기 중 수업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교원의 임의 수업일수 단축, 출석기준 미달자에 대한 임의학점 부여 미준수시 건당 30점씩 감점하며, 감점처리 한도는 없다.

③ 휴강 및 보강은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득한 출장명령부와 대학 혹은 학과의 행사, 교원의 경조사로 인한 불가피한 휴강을 제외하고 교원의 사적인 휴보강계 제출은 건당 10점씩 감점처리하며 감점처리 한도는 없다.

제5조(강의평가) ① 강의평가의 배점은 30점이며, 교학처가 계획, 시행, 결과보고 한 강의평가결과를 반영하며, 평가대상 기간 내의 학기별 강의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평가대상 기간 중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교원의 소속학부(과) 전임 교원의 평균점을 반영한다.

제6조(학생지도) ① 학생지도는 재적생관리로서 배점은 150점이다. <개정 2017.3.1.>

② 삭제 <2017.3.1.>

③ 삭제 <2017.3.1.>

④ 교원별 지도학생의 수는 교원의 소속학과 회의를 통해 교학처에 보고된 최종 재적생이다.

⑤ 학부 소속의 학과 편제정원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는 평가 대상연도 입학홍보처가 정한 학과별 정원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 학생지도결과의 점수 산출을 위한 산출식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우수자원유치) ① 우수자원유치는 신입생유치 결과에 따른 다면평가로서 학과평가, 홍보실적,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가점)에 관해 입학홍보처 내규에 따라 평가하며 총 배정된 점수는 200점이다. <개정 2017.3.1.>

제 3 장 연구영역

제8조(연구영역) ① 해당 교원의 연구업적은 기본적으로 전공분야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 연구업적은 대경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소속 교원으로 표기된 실적만을 인정한다.

제10조(논문) ① 논문은 내용과 체제가 학술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논문은 게재된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각 학술지는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1. 국제저명학술지 : SCI, SCI-E, SSCI 및 A&HCI에 등재된 학술지

2. 국제일반학술지

가. SCOPUS 등재학술지 :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술지. 다만, Conference paper,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는 불인정

나. 기타 국제일반학술지 : 외국어로 발행되는 학술지 중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학술지

3. 국내저명학술지 : 한국연구재단(KCI)의 등재(후보)학술지 중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학술지

4. 국내일반학술지 : 학술단체, 대학부설연구소 및 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술지. 다만, 기념논문집은 국내일반학술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학술회의 발표 논문 및 초록) 국내외 전문학술지 발행기관이 개최한 학술회의의 발표 논문집

및 초록집에 수록된 논문과 초록으로서 각각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제학술회의 논문 :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2. 국내학술회의 논문 : 국내학술회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3. 국제학술회의 논문 초록 : 국제학술회의 논문 초록집에 수록된 논문 초록. 다만, 국제학술회의 논문과 중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국내학술회의 논문 초록 : 국내학술지 발행기관이 개최한 국내학술회의 논문 초록집에 수록된 논문 초록. 다만, 국내학술회의 논문과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저서) ① 저서는 ISBN이 발부된 단행본으로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

② 개정판 : 저서의 개정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저서는 학술저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원의 소속 학과의 전공과는 일치하나, 자격증 및 시험대비 문제풀이 책자는 저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술저서가 아닌 교재일 경우 교원의 소속 학과 전공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교재의 분량은 최소 150페이지(목차 제외)이상으로서 대학 혹은 정부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은 교재의 경우는 40%, 지원받은 경우는 10% 인정한다.

제13조 삭제 <2017.3.1.>

제14조 삭제 <2017.3.1.>

제15조(논문 및 저서 연구업적 평가기준) ① 연구업적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다음의 각호를 기준으로 ②항의 각호에 따른다.

1. 제10조 ②항의 1, 2호의 가목, 3호 : 100%
2. 제10조 ②항의 2호의 나목, 4호 : 10%
3. 제11조의 1, 2호 : 30~50%(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
4. 제11조의 3, 4호 : 10%

② 연구업적 중 공동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주저자와 공동저자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 저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동저자로 간주한다.

1. 주저자(책임) : $\frac{2}{n+1} \times 100\%$ (n : 공저자 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주저자로 인정하되,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모두 우리 대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1명만 주저자로 인정한다.

2. 공동저자 : $\frac{1}{n+1} \times 100\%$ (n : 공저자 수)

3. 공저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으로 간주한다.

제16조(공연, 발표, 전시, 창작) 공연(연극, 뮤지컬, 음악회, 모델, 무용)과 전시(의상, 디자인, 헤어, 메이크업)는 국내외 저명전, 국내외 일반전, 기타로 구분하며, 그 인정비율은 국제저명 100%, 국내저명

80%, 국제일반 60%, 국내일반 40%, 기타 20%이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교원은 해당 업적의 반드시 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역할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 인정할 수 있다.

1. 연극(국제저명) : OECD 국가의 전문 극단이 제작한 작품 또는 저명한 국제연극제의 초청을 받은 작품으로서, OECD 국가의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50석 이상)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을 말한다.
2. 연극(국내저명) : 국내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50석 이상)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
3. 연극(국외일반) : 국제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국외의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50석 이상)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
4. 연극(국내일반) : 국내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100석 이상)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
5. 연극(기타) : 국외일반, 국내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60분 미만의 공연작품
6. 연극분야 창작물의 참여역할별 인정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역할구분	인정비율
연출	100%
제작, 기획, 예술감독, 창작희곡 및 대본, 조명디자인, 무대디자인, 음향디자인, 주연, 연기감독, 음악감독, 의상디자인, 기술감독, 무대감독	50%
드라마투르기, 공연번역, 조연	30%

7. 뮤지컬(국제저명) : OECD 국가의 전문공연장(1,000석 이상)에서 개최한 60분 이상의 개인작곡발표회(지휘, 독주, 독창, 오페라·음악극 포함) 및 국제음악제(10개국 이상 참가)에서의 작곡발표
8. 뮤지컬(국내저명) :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500석 이상)에서 개최한 60분 이상의 작곡발표회(지휘, 독주, 독창, 오페라·음악극 포함) 또는 공인된 국내 음악단체(악단)가 주최(연주)한 60분 이상 음악작품에서의 작곡발표·독주·독창·협연·연출
9. 뮤지컬(국외일반) : 국제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의 전문공연장(500석 이상)에서 개최한 30분 이상의 작곡발표회(지휘, 독주, 독창, 오페라·음악극 포함) 및 국제음악제(10개국 미만 참가)에서의 작곡발표
10. 뮤지컬(국내일반) : 국내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300석 이상)에서 개최한 30분 이상의 작곡발표회(지휘, 독주, 독창, 오페라·뮤지컬·음악극 포함) 또는 공인된 국내 음악단체(악단)가 주최(연주)한 30분 이상 음악작품에서의 작곡발표·독주·독창·협연·연출
11. 뮤지컬(기타) : 국외일반 및 국내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음악공연, 기금마련공연, 기념공연 등 특수목적 공연에서의 발표
12. 뮤지컬분야 창작물의 참여역할별 인정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역할구분	인정비율
연출	100%
제작, 기획, 예술감독, 창작희곡 및 대본, 조명디자인, 무대디자인, 음향디자인, 주연, 연기감독, 음악감독, 의상디자인, 기술감독, 무대감독	50%
드라마투르기, 공연번역, 조연	30%

13. 무용(국제저명) : OECD 국가의 전문공연장(1,000석 이상)에서 개최한 60분 이상의 개인창작 안무·독무

14. 무용(국내저명)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500석 이상)에서 개최한 60분 이상의 개인창작 안무·독무 또는 공인된 국내 악단이 협연한 단체공연 중 60분 이상 작품에서 안무·주연(독무)·연출

15. 무용(국외일반) : 국제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의 전문공연장(500석 이상)에서 개최한 30분 이상의 개인창작 안무·독무 또는 단체공연에서의 안무·주연(독무)·연출

16. 무용(국내일반) : 국내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300석 이상)에서 개최한 30분 이상의 개인창작 안무·독무 또는 단체공연에서의 안무·주연(독무)·연출

17. 무용(기타) : 국외일반 및 국내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용공연, 기금마련공연, 동창회 공연, 졸업공연, 기념공연 등 특수목적 공연에서의 활동

18. 영화(국제저명) : 국외의 단체가 주관하는 저명한 국제영화제의 초청을 받은 작품이나, OECD 국가의 전문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OECD 국가의 전문상영관(300석 이상) 또는 공중파, 케이블TV(가입자 백 만 이상)에서 상영한 60분이상의 작품

19. 영화(국내저명) : 국내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하고, 국내 전문상영관(150석 이상) 또는 공중파, 케이블TV(가입자 백 만 이상)에서 상영한 60분이상의 작품, 전국규모 이상의 학회발표에 초청 상영된 15분 이상의 작품

20. 영화(국외일반) : 국제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의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 또는 OECD 국가 이외의 국제영화제의 초청을 받은 작품으로서 국외의 전문상영관(100석) 또는 공중파, 케이블TV에서 상영한 15분이상의 작품

21. 영화(국내일반) : 국내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의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 국내 전문상영관(50석) 또는 공중파, 케이블TV에서 상영한 15분이상의 작품

22. 영화(기타) : 국외일반, 국내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작품

23. 영화분야 창작물의 참여역할 별 인정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역할구분	인정비율
감독	100%
제작, 기획, 시나리오, 촬영, 편집, 시각특수효과, 프로덕션디자인, 사운드디자인, 주연	50%
각색, 번안, 조연출, 조감독, 조연, 기술감독, 조명감독	30%

24. 모델(국제저명) : OECD 국가의 공연장(1,000석 이상 혹은 면적 1,000㎡ 이상)에서 개최한 60분 이상의 국제단체 주관의 본선, 국제적인 탑 디자이너 10인 이상 참여하는 컬렉션의 모델 전문공연 혹

은 이에 준하는 공연의 연출, 기획 혹은 모델로서의 참여

25. 모델(국내저명) : 국내 공연장(500석 이상 혹은 면적 500㎡ 이상)에서 개최한 60분 이상의 국제 단체 주관의 국가 예선 및 전국단체 주관의 본선, 국내 탑 디자이너 10명 이상 참여하는 컬렉션의 모델 전문공연 혹은 이에 준하는 공연의 연출, 기획 혹은 모델로서의 참여

26. 모델(국제일반) : 국제저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연장((500석 이상 혹은 면적 500㎡ 이상)에서 개최한 30분 이상의 국제 중소단체 주관 본선, 국제적인 탑 디자이너 5인 이상 참여하는 컬렉션의 모델 전문공연 혹은 이에 준하는 공연의 연출, 기획 혹은 모델로서의 참여

27. 모델(국내일반) : 국내저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연장((200석 이상 혹은 면적 300㎡ 이상)에서 개최한 30분 이상의 전국 중소단체 본선, 국내 탑 디자이너 5명 이상 참여하는 컬렉션의 모델 전문공연 혹은 이에 준하는 공연의 연출, 기획 혹은 모델로서의 참여

28. 모델(기타) : 국내외 저명전 및 일반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연장에서 개최한 30분 이상 공연의 연출, 기획 혹은 모델로서의 참여

29. 모델(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를 제외한 공연) 공연의 인정비율은 공연의 총괄 연출은 100%, 공연파트별 연출은 50%, 모델로서의 참여는 20%, 공연기획은 50%로 인정한다. 기타 무대, 조명, 의상, 음향, 분장, 메이크업 감독은 20% 인정한다.

30. 전시(국제저명) : OECD 국가의 비엔날레 및 전문관(면적 1,000㎡ 이상 또는 300평 이상)에서의 개인전시회 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초대(기획) 단체 전시회를 말한다.

31. 전시(국내저명) : 국내 전문관(면적 500㎡ 이상 또는 150평 이상)에서의 개인전시회 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초대(기획) 단체 전시회를 말한다.

32. 전시(국제일반) : 국제저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의 전문관(면적 500㎡ 이상 또는 150평 이상)에서의 개인전시회 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초대(기획) 단체 전시회를 말한다.

33. 전시(국내일반) : 국내저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의 전문관(면적 300㎡ 이상 또는 전시면적 150㎡ 이상)에서의 개인전시회 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초대(기획) 단체 전시회를 말한다.

34. 기타 : 국외일반 및 국내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시관에서의 개인, 단체전시회를 말한다.

35. 단체전시회 인정환산율은 2인전은 개인전시회의 50%, 3인전은 40%, 4인전은 30%, 5인전 이상 20%로 인정하며, 전시기획은 개인전시전의 50% 인정한다.

제 4 장 봉사영역

제16조(봉사영역의 평가분야 및 기준) ① 봉사영역은 보직활동, 학생지도활동, 교내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학술단체 및 정부사회단체활동, 대학발전기금 기부, 외국인유학생 유치활동, 행정업무협조 등을 평가한다.

② 봉사영역 평가는 기본 점수는 없으며, 최대 1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모든 활동은 교내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한 공문, 외

부의 경우 기관장 등 단체의 대표 명의의 공문 혹은 위촉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1. 보직활동(평가기간 내 3개월 이상) : 부총장 및 총괄조정본부장(30점), 처·실장, 학장 및 단장(20점), 센터장(15점), 학과(부)장 7점을 부여하되, 평가대상기간 내 보직인사 발령으로 대상자가 변동되었을 경우는 보직임명 기간을 비율로 구분하여 차등 부여한다. 단 3개월 이상 보직활동만을 인정한다.

2. 교과 외 학생지도활동 :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활동으로서 건당 2점 인정, 최대한도 10점 이내
가. 해당 행정부서에 활동 계획서가 제출되어 총장의 승인을 득한 교과 외 학생활동 지도

나. 교학처 학생지원팀에 등록된 동아리로서 정해진 기간 내 동아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도활동

3. 교내 교직원대상 교육활동 : 다음에 해당되는 활동으로서 건당 2.5점 인정, 최대한도 5점 이내
가. 해당 행정부서의 계획수립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득한 교원 혹은 직원 대상의 특별강의 활동으로 보수를 받지 않은 교육활동

4. 학술단체 및 정부사회단체활동 : 다음에 해당되는 활동으로서 건당 2.5점 인정, 최대한도 5점 이내
가. 전국규모의 학술단체로서 임원, 간사 및 편집위원 활동(평가기간 중 6개월 이상)

나. 전국규모 학술단체의 학술회의 기조강연, 좌장, 지정토론, 초청강연 등 활동

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위원활동(자문, 평가, 출제, 심사, 심의, 심판 등)

5. 대학발전기금 기부활동 : 50만원 이상으로서 50만원 당 5점 인정, 최대한도 50점

6. 외국인유학생유치활동 : 외국인의 우리대학 정규 학위과정에 신입학 유치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대학 글로벌 어학센터에 수학 중인 한국어연수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정규 학위과정으로의 유치활동 평가이며, 외국인 신입생 1인 유치시 5점 인정하며 최대 4명까지 인정한다.

7. 행정업무협조활동 : 교원의 대학 행정본부의 각 행정부서의 협조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행정부서의 내부 지침에 따라 평가 반영하며, 20점을 반영한다. 대상 행정부서는 교학처, NCS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진로심리상담센터로 한다.

제 5 장 산학협력영역

제17조(산학협력영역의 평가분야 및 기준) ① 산학협력영역은 학과업적평가, 개인업적평가, 취업지도 실적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

② 학과업적평가(50점) <개정 2017.3.1.>

1. 산학협력교육활동(30점)

가. 교육과정개발(개편은 제외) : 10점

나. 산학협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건당 2점(최대10점)

다. 취업특강 개발 및 운영 : 건당 2점(최대10점)

라.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 10점

2. 산학협력봉사활동(20점)

가. 산학협력체결 : 건당 1점(최대10점)

나. 공공단체·산업체와의 산·관·학 공동행사 : 건당 2점(최대10점)

③ 개인업적평가(250점) <개정 2017.3.1.>

1. 산학협력교육활동(150점)

가. 현장실습 업체 개발 : 건당 10점

나. 현장실습 업체 지도 : 업체당 10점

※ 가항+나항 최대 50점

다. 창업동아리 운영 : 연간 20점

라. 취업약정제 협약 및 운영 : 건당 20점

마. 현장견학지도 : 건당 10점

바. 공모전·경진대회 지도 : 건당 5점

(수상내역에 따라 2~5점)

성적	입상	3~4위	1~2위
점수	2점	3점	5점

사.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지도 : 1팀당 20점

아. 지도학생 창업 : 건당 50점

자. 산학협력 업체와의 취업 관련 성과 : 건당 30점

2. 산학협력 봉사활동(100점)

가. 산업체 교육 및 강연 : 회당 10점

나. 산업체 기술자문위원·연구위원 참여 : 건당 10점

다. 사외이사·보육닥터 : 건당 10점

라. 중소기업 애로 기술지도 : 건당 20점

마.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 건당 50점

바. 가족회사 운영실적 : 건당 10점

사. ExpUp Station 운영 : 건당 10점

3. 산학협력 가점

가. 국제특허 : 200점

나. 국내특허 : 100점

다. 실용신안/의장, 디자인등록/소프트웨어등록 : 100점

라. 연구비수혜(용역포함) : 100만원당 5점

마. 기술이전 : 50만원당 3점

바. 산업체 공동연구 및 현장프로그램참여 : 1건당 30점

사. 연구간접경비 : 50만원당 2점

아. 기자재 및 재료기증 유치 : 100만원당 5점

자. 산업체 장학금 : 100만원당 5점

④ 산학협력활동 중 연구실적은 연구영역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비율은 100%로 한다. 다

만 연구영역으로의 인정 점수는 50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3.1.>

⑤ 재임용, 승진평가 시 산학협력연구 업적을 연구실적으로 대체 인정 한다. <개정 2017.3.1.>

제18조(취업지도영역의 평가분야 및 기준) ① 취업지도 실적과 취업률 실적을 말하며, 취업지도 실적은 30점, 취업률 실적 70점, 총 100점으로 한다. <개정 2017.3.1.>

② 취업지도 실적은 취업지도 상담, 취업현황 조사, 산학협력 업체와의 취업 관련 성과로 평가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지도 상담(15점) : 취업지도상담(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학생이력관리시스템 등) 건수를 환산 적용하고 내용의 충실도도 평가한다. 단, 동일학생의 중복 건수도 개별 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17.3.1.>

2. 취업현황 조사(15점)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대학 자체 취업현황 조사 제출(입력) 건수를 환산 적용하고 내용의 충실도도 평가한다.

3. 삭제 <2017.3.1.>

③ 취업률 실적은 개인평가 50점, 학과평가 20점으로 평가하며, 졸업생 전체 취업률, 유지취업률, 기타 취업 관련 사항 등을 대학알리미의 공시 자료와 졸업 후 상황별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한다. <개정 2017.3.1.>

④ 학과와 지도학생의 취업수치를 적용하며, 교원업적평가지기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취업수치를 적용한다.

제 6 장 부가영역

제19조(부가영역 평가분야 및 기준) 부가영역은 총장평가, 포상, 징계로 구분되며 평가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총장평가 : 배점은 80점이며, 평가기준은 행정본부가 주관 시행하는 대외평가 혹은 대외사업 참여 교원에 대한 총장의 평가와 부가영역 이외의 평가영역에서 평가할 수 없는 업적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교학처가 행정부서로부터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 보고한다.

2. 포상 : 법인이사장 및 총장이 수여하는 수상실적을 말하며 최대 50점이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차등 가점 배정한다. 다만, 학과 단체상일 경우 소속 전임교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가. 이사장상 : 가점 30점

나. 총장상 : 가점 20점

3. 징계 : 총장의 직권경고를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징계의 양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감점하며, 교원의 소속 부서 및 학과에 대한 징계처분일 경우 전임교원 이상의 수로 나누어 반영한다.

가. 정직 : 감점 100점

나. 감봉 : 감점 70점

다. 견책 : 감점 50점

라. 경고(총장 직권경고 포함) : 감점 30점

마. 주의(총장 직권주의 포함) : 감점 20점

바. 시말서 및 사유서 : 감점 10점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2017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배점표 (배점 400점) <개정 2017.3.1.>

세부영역	세부기준	배점	비고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정 2016.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학처 및 NCS지원센터 내규 ·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20점	
수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일수 임의단축, 출석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건당 감점 30점 · 출장명령부, 대학 및 학과전체 행사임장, 교원 경조사 이외 휴강계 제출 시 건당 감점 10점 · 휴강계 제출에 따른 미보강 건당 감점 20점 	감점 (감점한도 없음)	전문학사 과정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준
강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연도 1학기, 평가직전연도 2학기 2개학기의 강의평가결과 평균값 	30점	
재적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교원별 재학생 총원 현황 ※ 편제정원은 학과 지도교수 1/n = {(4월 1일자 정원내외포함 재학생 총원율 + 10월 1일자 정원내외 포함 재학생 총원율) / 2 × 0.3} + {(5월 1일자 정원내외 포함 재학생 총원율 + 11월 1일자 정원내외포함 재학생 총원율)/2 × 0.7} / 120 × 150 <개정 2016.6.23.> 	150점	
우수자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평가, 홍보실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 (가점, 20점 이내)등 입학홍보처 내규 	200점	